

의안번호	2214563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6.1.2.
추계번호	25B6504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)	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류 재고품(미판매 의류)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(제2항)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7조 (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(미판매 의류)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는 의류 재고의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, 재고 관리·처리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,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 또는 연구용역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한편,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

부는 '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'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

[표 1] 연구용역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만원)

사업명	수행기간	수행기관	계약액	주요내용
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	2025.7.31. ~12.31.	(재)에프아이티아이 시험연구원	7,800	·의류 순환이용 정책·기술·산업 조사 및 분석 ·재고의류 관리 개선방안 마련 ·폐의류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 마련 ·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지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의 대상·주기·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